

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5. 4. 29

제 안 자 :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되어있고, 또한 도내 대부분의 시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, 농촌 개발에 따른 편의성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정코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개정조례안 제21조제4호의 농림지역 : 2만제곱미터 미만을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수정함.

3. 참고사항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

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1. 개정조례안 제21조제4호의 농림지역 : 2만제곱미터 미만을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수정함.

신 구 조 문 대 조 표

현행	개정 (안)	수정 (안)
제19조(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) (생략) 1. - 2. (생략) 3. 토지의 형질변경 가.-라. (생략) <u>마.농지안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(단, 수직으로 2m 이하의 절토·성토·정지·매립·토사의 채취에 한한다)</u> 4.-6. (생략)	제19조(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) (현행과 같음) 1.- 2. (현행과 같음) 3. 토지의 형질변경 가.-라. (현행과 같음) <u>마. <삭 제></u> 4.-6. (현행과 같음)	제19조(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) (개정안과 같음) 1.- 2. (개정안과 같음) 3. (개정안과 같음) 가.-라. (개정안과 같음) <u>마. (개정안과 같음)</u> 4.-6. (개정안과 같음)
제21조(개발 행위허가의 규모)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. - 3. (생략) <u>4.농림지역 : 1만제곱미터 미만</u>	제21조(개발 행위허가의 규모)(현행과 같음) 1.- 3.(현행과 같음) <u>4.농림지역 : 2만제곱미터 미만</u>	제21조(개발 행위허가의 규모)(개정안과 같음) 1.- 3.(개정안과 같음) <u>4.농림지역 : 3만제곱미터 미만</u>